

# 「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박찬원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2015년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-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,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 및 특허권을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직무발명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 마련으로 공무원의 창의 행정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권리의 승계(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)

-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함.
- 발명이 특허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창군은 직무 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
-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하여야 함.

나. 발명자에 대한 보상(제4조, 제14조, 제15조)

- 등록보상금 : 특허권(100만원), 실용신안권(50만원), 디자인권(20만원)
- 처분보상금 : 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지급

다.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등록(제9조, 제11조, 제12조)

-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를 출원하여야 함.

라.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(제19조, 제20조)

- 직무발명 및 군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,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

마. 자유발명에 대한 준용(제21조)

-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양도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

### 3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,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,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직무발명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책 마련과 공무원의 창의행정, 연구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